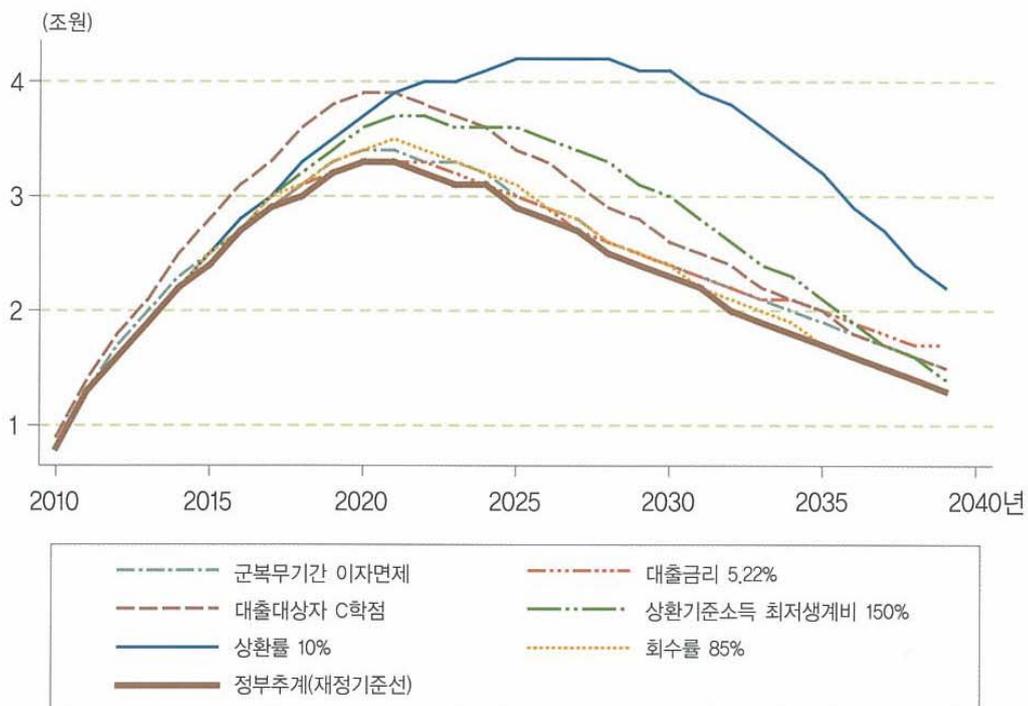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2010. 2



법안비용추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제2호)

- 총괄** | 김호성 (예산분석실장)
조정 |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
 임재봉 (법안비용추계2팀장)
작성 | 서기영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관)
 이진우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관)
 여은구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관)
디자인 | 이정민 (경제예산분석팀 RA)
지원 | 조혜정 (법안비용추계2팀)

「법안비용추계」 보고서는 현안으로 대두된 재정수반 입법에 대하여, 재정기준선(baseline) 및 정책변수별 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안심사가 중장기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락: 02-788-3766 bce2@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2010. 2

서 기 영
이 진 우
여 은 구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요 약 / 1

I. 서 론 / 8

- 1. 추계의 배경 8
- 2. 추계의 목적 및 방법 11

II. ICL 개요 및 국회 수정 사항 / 13

- 1. ICL 도입 취지 13
- 2.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와의 차이 14
- 3. 국회에서 수정된 사항 17
- 4. 해외 사례 21

III. 정부 추계: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 23

- 1. 정부추계의 전제 23
- 2. 정부추계(재정기준선) 결과: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30

IV. NABO 추계: 정책변수별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 33

- 1. 추계 변수 33
- 2. 정책변수별 추계결과 34

V. 결론 및 시사점 / 51

[부 록] / 57

표 목차

[표 1] ICL 관계 의안(2010. 1. 18. 국회통과)	9
[표 2] ICL 세부내용 관련 쟁점 사항	10
[표 3] 연도별 학자금 대출현황	15
[표 4]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 ICL 비교	16
[표 5] 저소득층 지원 관련 국회 수정내용	18
[표 6]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18
[표 7] 국내 대학의 재정수입 현황 및 비중(2007년 결산 기준)	19
[표 8] 등록금 상한제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내용	20
[표 9] 해외 ICL 사례	22
[표 10] 정부추계 적용 변수	23
[표 11]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수혜자 수 및 구성비	24
[표 12] 대학별 평균 등록금: 2009년	25
[표 13] 해외 ICL 시행 국가 적용금리	26
[표 14] 소득별 상환시기 및 징수방법	28
[표 15] 총급여액별 근로소득공제액 및 의무상환액(소득세법 제47조)	29
[표 16] 학자금 대출을 위한 연평균 정부부담 재정소요액(정부추계)	31
[표 17] 학자금 대출 연평균 신규 채권발행액 규모: 정부추계	32
[표 18] 대상 변수 및 변수의 값	34
[표 19]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011~2039년	35
[표 20]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대출금리 5.22%): 2011~2039년	37
[표 21]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총액(대출금리 5.22%): 2011~2039년	38
[표 22]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분포(2008년)	40
[표 23]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대출대상자 C학점): 2011~2039년	41
[표 24]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총액(대출대상자 C학점): 2011~2039년	42

[표 25]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 150%): 2011~2039년	44
[표 26]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총액(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2011~2039년	45
[표 27]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상환율 10%): 2011~2039년	46
[표 28]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총액(상환율 10%): 2011~2039년	47
[표 29] 최근 취업률 및 종합소득세 징수율	49
[표 30]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회수율 85%): 2011~2039년	50
[표 31] ICL 도입에 따른 연평균 정부부담 재정소요액: 정부추계	52
[표 32] 학자금 대출 연평균 채권발행규모: 정부추계	52
[표 33]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 2011~2039년	53
[표 34] 주요 정책변수별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2011~2039년	54
[표 35] 주요 정책변수별 채권발행 누계총액: 2011~2039년	55

그림 목차

[그림 1]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정부추계: 재정기준선): 2010~2039년	31
[그림 2] 채권발행액 추이(정부추계: 재정기준선): 2010~2039년	32
[그림 3]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010~2039년	36
[그림 4]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대출금리 5.22%): 2010~2039년	38
[그림 5]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대출금리 5.22%): 2010~2039년	39
[그림 6]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대출대상자 C학점): 2010~2039년	41
[그림 7]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대출대상자 C학점): 2010~2039년	42
[그림 8]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 150%): 2010~2039년	44
[그림 9]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2010~2039년	45
[그림 10]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상환율 10%): 2010~2039년	47
[그림 11]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상환율 10%): 2010~2039년	48
[그림 12]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회수율 10%): 2010~2039년	50
[그림 13] 주요 정책변수별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 2010~2039년	54
[그림 14] 주요 정책변수별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 2010~2039년	56

요 약

1. ICL 개요 및 추계 목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는 대학생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득 연계형 학자금대출임
 - ICL은 졸업 후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리금 일체의 상환이 유예되고, 상환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부담액을 장기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등 상환조건이 채무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차등 설계된 학자금 대출제도임
 -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함
 - ICL 대출 요건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최소 의무상환액을 매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총 대출액에 대해 생애에 걸쳐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업무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임

- 본 추계의 목적은 새로 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부담 재정소요액**과 대출재원의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규모를 추계**함
 - 제정 법규정에 따른 정부부담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재정기준선: 정부추계**) 검토
 - 재정기준선(baseline)을 토대로 6개의 주요 정책변수를 변동시키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추계(**NABO 추계**)

2. 재정기준선(정부추계) 검토

□ 재정기준선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연평균 재정소요액은 2011~2015년간 1.9조원에서 2015~2020년간 3.0조원으로 증가

- 정부추계에서의 기본 가정은 대출인원 95.8만명, 1인당 대출금액 800만원, 등록금 인상률 3%, 명목임금 상승률 5.5%, 상환율 20% 등임
- 정부추계에서 나타난 연도별 재정소요액은 2010년 8,222억원(국회확정예산액)을 시작으로, 2020년 3.3조원으로 정점에 이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39년 1.3조원 수준으로 전망
- 정부추계에 따르면, 기존 학자금 대출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ICL 도입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0년 3,205억원, 2010~2014년간 연평균 8,770억원, 2015~2019년간 연평균 1조 9,080억원, 2020~2024년간 연평균 1조 9,107억원 수준으로 전망
- 신규 채권발행규모는 2010년 8.4조원을 시작으로 2011~20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1조원 수준에 이르렀다가, 2015~2020년간 2.9조원 수준으로 감소 예상
 - 채권발행 누계총액의 경우, 2020년에 정점인 58.3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39년 2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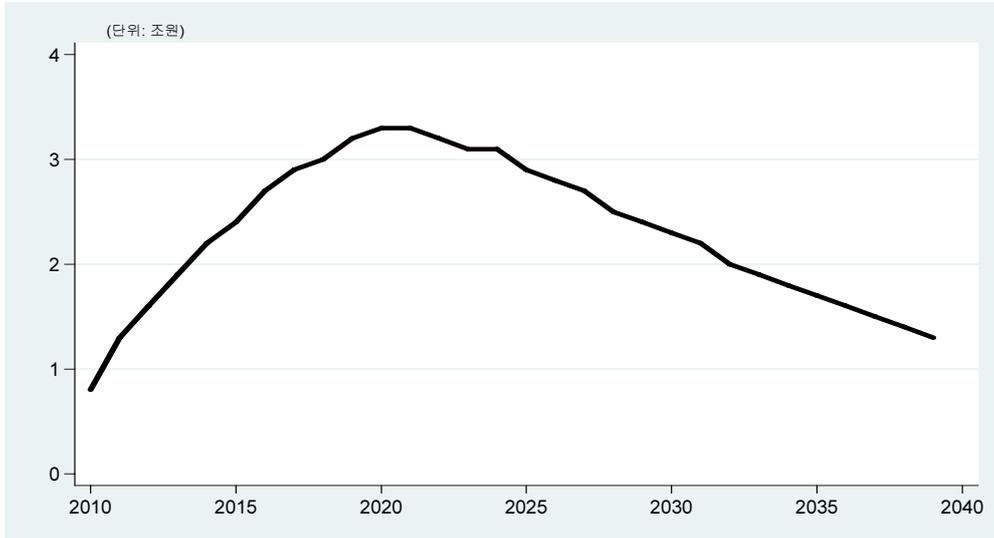
〈ICL의 정부부담 재정소요 및 채권발행규모: 정부추계〉

(단위: 억원)

	2010년	2011~2015년간 연평균	2016~2020년간 연평균	정점 도달
재정지출 소요	8,222	18,867	30,114	2020년 3.3조원
신규 채권발행규모	84,184	70,786	28,934	2020년 58.3조원 (채권발행 누계총액)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재정기준선): 2010~2039년〉



3. NABO 추계 결과: 정책변수별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 재정기준선에서 주요 정책변수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발생하는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 누계총액을 추계함

- 주요 정책변수는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대출금리, 대출대상자, 상환기준소득, 상환율, 대출금 회수율 등 6가지임

〈주요 정책변수와 변수의 조건〉

주요 정책변수	변수의 조건	
	현행 제도	변경 가정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없음	있음
대출금리	5.80%	5.22%
대출대상자	B학점	C학점
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 100%	최저생계비 150%
상환율	20%	10%
회수율	90%	85%

가. 정부부담 재정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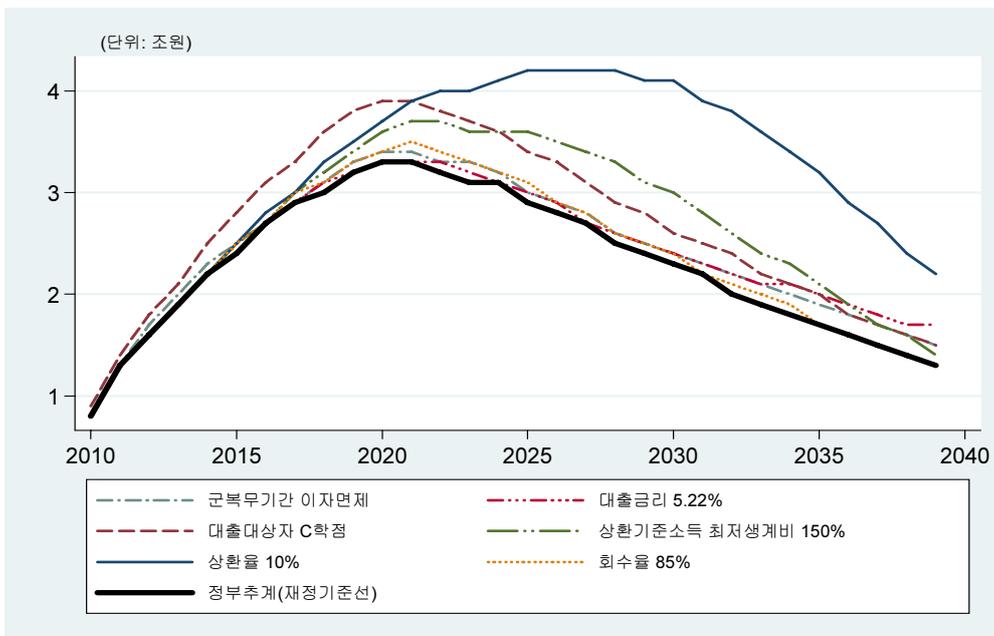
- ICL 제도 운영에서 쟁점으로 대두되는 주요 정책변수의 조건 변경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치가 과소한 변수별 순서(2020년 기준)는 대출금리, 군복무 이자면제, 회수율, 상환기준소득, 상환율, 대출대상자 순임**
 - 추가 재정소요액의 규모별 순서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2030년 이전까지는 그 규모가 작으나 2030년 후반에는 여타 변수별 추계치보다 큼(2039년 3,292억원)
 - 대출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수반되는 대출인원 증가(본 추계에서는 배제됨)를 고려하면, 2030년 이전의 추가 재정소요액은 본 추계치보다 커질 가능성 있음
 - 제도 시행 후 초반 10년(2020년까지) 동안은 ‘대출대상자(학점기준) 확대’ 시 추가 재정소요액이 가장 크며(2020년 5,706억원), 2021년 이후 2030년까지는 ‘상환율 변경’(2030년 1.8조원)과 ‘상환기준소득 변경’(2030년 7,025억원) 순으로 추가 재정소요액이 큰 것으로 추계됨
- 추가 재정소요액을 반영한 **총 재정소요액의 경우, 상환율 변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별 추계치는 2020년에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됨**
 -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이 과소한 변수별로 순서(2020년 기준)를 보면, 대출금리 변경 3.3조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및 회수율 변경 각각 3.4조원, 상환기준소득 변경 3.6조원 수준임
 - 상환율이 낮아지는 경우, 총 재정소요액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은 여타 변수별 추계치보다 5년 정도 늦고 규모도 가장 큼(2025년 4.2조원)
 - 대출대상을 C학점자로 확대할 경우에는 2020년까지 초반 10년 동안의 재정소요액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대출대상 확대: 2011년 1.4조원 → 2020년 3.9조원 → 2025년 3.4조원
 - 상환율 하향조정: 2011년 1.3조원 → 2020년 3.7조원 → 2025년 4.2조원

<주요 정책변수별 정부부담 재정소요액: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정부추계 총 재정소요액(A)]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변수 변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39	806	933	1,081	1,253	1,452	1,635
대출금리 5.22%	20	88	224	568	1,469	2,649	3,292
대출대상자 C확점	1,055	3,720	5,706	5,059	3,582	2,410	1,472
상환기준소득 150%	-	439	2,789	6,386	7,025	3,574	883
상환율 10%	-	605	4,439	12,334	17,765	14,434	8,439
회수율 85%	-	804	1,515	1,450	864	192	-
[변수 변경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A+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13,170	25,136	33,882	30,439	24,037	18,733	14,864
대출금리 5.22%	12,951	24,418	33,173	29,926	24,253	19,930	16,521
대출대상자 C확점	13,986	28,050	38,655	34,417	26,366	19,691	14,701
상환기준소득 150%	12,931	24,769	35,738	35,744	29,809	20,855	14,112
상환율 10%	12,931	24,935	37,388	41,692	40,549	31,715	21,668
회수율 85%	12,931	25,134	34,464	30,808	23,648	17,473	13,229

<주요 정책변수별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 2010~2039년>



나. 채권발행 누계총액 규모

□ 채권발행 누계총액의 경우, 상환율 변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별 추계치가 정점에 달하는 시점은 2020년으로 추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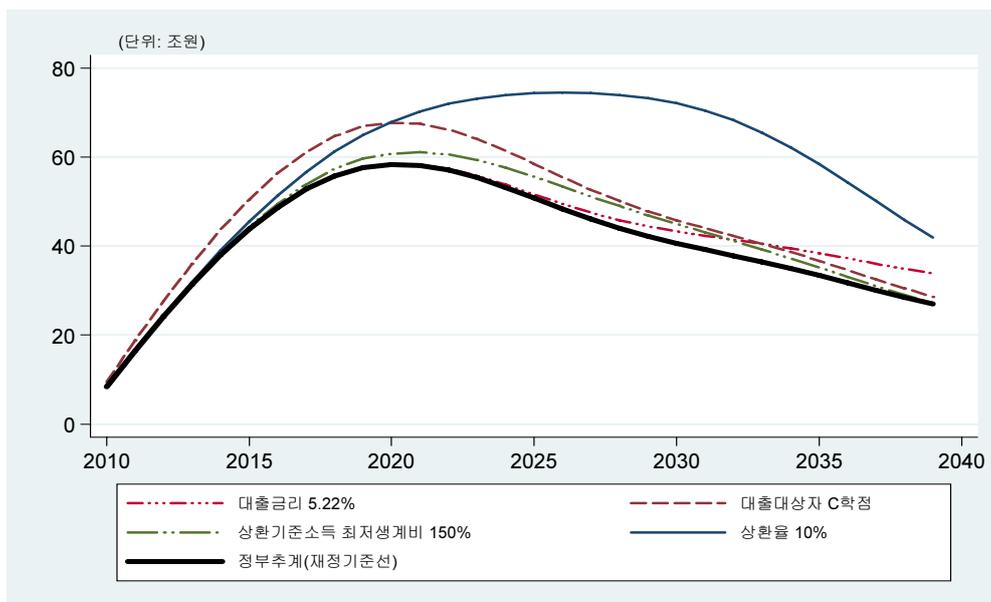
- ICL 제도의 주요재원으로서 발행되는 채권은 대납이자 등의 정부부담 재정소요를 수반하게 되며, 채권발행 누계총액 규모가 클수록 재정소요도 커짐
- 채권발행 누계총액이 과소한 변수별 순서(2020년 기준)를 보면, 대출금리 변경 58.4조원, 상환기준소득 변경 64.1조원, 대출대상자 변경 67.7조원, 상환율 변경 67.9조원 수준임
- 상환율 변경시 누계총액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은 여타 변수별 추계치보다 5년 정도 늦고 규모도 가장 크며, 대출대상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2020년까지 초반 10년 동안의 누계총액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대출대상 확대: 2011년 18.8조원 → 2020년 67.7조원 → 2025년 58.5조원
 - 상환율 하향조정: 2011년 16.6조원 → 2020년 67.9조원 → 2025년 74.4조원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및 회수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권발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주요 정책변수별 채권발행 누계총액 및 정부추계치와의 차이: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정부추계채권발행누계총액(A)]	165,461	438,112	582,782	508,065	406,410	333,882	270,080
[변수 변경에 따른 채권발행 누계총액 차이(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	-	-	-	-	-
대출금리 5.22%	2	123	1,488	8,307	26,514	50,464	68,492
대출대상자 C학점	22,994	67,378	94,542	76,574	52,068	32,908	16,277
상환기준소득 150%	428	11,794	58,609	118,120	117,750	54,960	8,783
상환율 10%	547	16,560	95,817	235,974	315,275	249,936	149,307
회수율 85%	-	-	-	-	-	-	-
[변수 변경에 따른 채권발행 누계총액(A+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	-	-	-	-	-
대출금리 5.22%	165,463	438,235	584,270	516,372	432,924	384,346	338,572
대출대상자 C학점	188,455	505,490	677,324	584,639	458,478	366,790	286,357
상환기준소득 150%	165,889	449,906	641,391	626,185	524,160	388,842	278,863
상환율 10%	166,008	454,672	678,599	744,039	721,685	583,818	419,387
회수율 85%	-	-	-	-	-	-	-

<주요 정책변수별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 2010~2039년>



1. 서론

1. 추계의 배경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안(임해규의원 대표발의)」 및 「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정부)」이 2010년 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ICL 관계 법안은 2009. 11.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동 법안이 저소득층 지원을 감소시키며 등록금 상한제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유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야당¹⁾이 법안상정을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010. 1학기부터 ICL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여 2010. 1. 8.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후 연속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2010. 1. 14. 등록금 상한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ICL 관계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ICL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이 되는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2010. 1. 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ICL 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0. 1. 18. 국회를 통과한 ICL 관계 의안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률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이다.

1)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표 1] ICL 관계 의안(2010. 1. 18. 국회통과)

	의안명	주요내용	소관 상임위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ICL 대출방법, 소득별 상환방법 등 규정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 한도 폐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록금 상한제	
동의안	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정부)	정부보증채 발행 동의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 법안 통과로 2010. 1학기부터 ICL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으나, ICL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군복무기간 이자, 대출금리, 성적요건,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회수율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군복무기간 이자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번에 통과된 ICL 관계 법률이 군입대자 대한 특례를 두지 아니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입대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군복무자는 군미필자보다 군복무 기간만큼 취업이 늦어져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거치기간 중 이자가 발생하므로, 군 복무기간에 대해 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주지 않으면 국방의무를 다한 군필자가 군면제자 등 미필자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대출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제1항), 2010. 1학기 예상 이자율로 알려진 연 5.8%가 높다는 문제제기가 있다.²⁾ 학자금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융자사업에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정책금리)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대출대상자의 범위로 설정된 학점기준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2) 정부는 채권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2010. 1학기 이자율을 5.7%로 결정하였다(2010. 1.22).

있다. ICL 대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성적기준은 당초 C학점에서 B학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ICL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C학점자는 연간 약 1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넷째, 낮은 상환기준소득과 높은 상환율 설정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의 100% 수준, 상환율은 20%로 설정되어 있다.

다섯째, 정부가 설정한 회수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ICL 회수율을 90% 수준으로 가정하여 재정소요액을 추계하였으나, 대출자 취업률, 종합소득세 징수율 등 관련 지표를 고려할 때 회수율이 9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쟁점사항이 현행 ICL 제도에 반영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를 추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제도에 대한 정부추계(재정기준선)를 검토한 후,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변수의 조건이 변동될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ICL 세부내용 관련 쟁점 사항

쟁점 사항	현행 제도의 내용
군복무기간 이자	군복무기간 이자 발생으로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상환금액이 커짐
대출금리	5.8%는 대출자가 부담하기에는 높은 수준임
성적요건	C학점자는 ICL 적용대상에서 제외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상환기준소득이 낮고 상환율이 높아서 저소득층 부담이 큼

2. 추계의 목적 및 방법

본 추계의 목적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³⁾과 관련한 정부부담 재정소요액과 대출 재원이 되는 채권발행규모를 향후 30년간(2010~2039년)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추계를 재정기준선으로 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변수의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추가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 누계총액 규모를 추계하고자 한다.

재정기준선이 되는 정부추계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데, 동 데이터는 남녀 대학생의 소득수준과 학점, 취업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추계는 ICL과 관련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추계에 사용된 등록금 인상률과 임금인상률, 대출인원 등과 같은 패러미터의 경우, 그 값이 유동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값을 적용함에 따라 추계의 정확성이 감소되는 한계는 있다. 또한 하나의 변수가 변경될 경우 타 변수도 변화하게 되는 변수간 상호작용과 그 영향의 정도를 추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⁴⁾ 그리고 추계기간이 30년(2010~2039년)이므로, 연도가 거듭될수록 추계의 정확성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방법 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ICL 제도 시행에 따른 대강의 재정소요액과 변수조건 변경에 따른 재정기준선(정부추계)과의 재정소요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ICL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ICL의 개요와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간략히 살피고, 제Ⅲ장에서는 정부가 추계한 ICL

3) ICL의 도입으로 소득 1~7분위 대학생에 대해서는 ICL이 적용되지만, 소득 8~10분위 대학생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금 대출이 향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든 채권발행규모 및 재정지출액은 ICL 뿐만 아니라 기존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4)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하향조정될 경우에는 대출인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추계모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변동은 배제하였다.

관련 정부부담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액을 제시하였다. 제IV장에서는 제III장의 정부추계를 재정기준선으로 하여, 최근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6가지 정책변수가 변동될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경우, 재정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소요액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제V장은 결론 및 시사점으로 구성하였다.

II. ICL 개요 및 국회 수정 사항

1. ICL 도입 취지

ICL은 대학생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득 연계형 대출’(Income Contingent Loan)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ICL은 졸업 후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리금 일체가 상환유예되고, 상환금액도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부담액을 장기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등 상환조건이 채무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차등 설계된 선진국형 학자금 지원제도로 알려져 있다.⁵⁾

ICL의 특징은 대출금의 상환시기와 상환금액이 채무자의 소득발생 유무 및 소득금액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출금 상환의무가 유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자금 채무 불이행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여 2009. 6월 기준으로 13,804명에 이르렀다.⁶⁾ ICL은 학자금 대출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어 상환능력을 갖출 때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대학재학 중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졸업 후에 사회인, 경제인으로 자리잡는데 있어서 학자금 채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2010. 1월 현재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있으며, 미국은 유사제도를 2009. 7월에 도입하였다(상세내용은 후술하는 해외사례 참조).

6) 학자금 채무불이행자 수는 2006년 670명, 2007년 3,736명, 2009년 13,80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장학재단).

2.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의 차이

가. 기존 학자금 대출 현황

정부는 2005.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생이 민간 금융회사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정부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을 위한 이차보전을 포함하고 있다.⁷⁾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9. 2학기 기준 대출자가 458,882명(전체 대학재학생의 약 23%), 1인당 대출금액은 약 549만원, 대출금 총액은 2조 5,219억원으로 나타난다.

2009. 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동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9.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학자금 대출방식도 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7%를 상회하여 고금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채권발행을 통해 대출금 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2009. 2학기에는 대출 이자율이 5.8%로 낮아졌다.

7) 소득 1~3분위는 무이자, 4·5분위는 4% 지원, 6·7분위는 1.5%를 지원한다.

[표 3] 연도별 학자금 대출현황

연도	대출 인원 (명)	대출건수 (건)	총 대출금액 (억원)	1인당 평균 대출금액 (백만원)	이자율 (%)
2006	361,971	514,706	16,257	449	1학기 7.05
					2학기 6.84
2007	424,259	615,063	21,295	502	1학기 6.59
					2학기 6.66
2008	432,449	634,934	23,486	543	1학기 7.65
					2학기 7.80
2009	458,882	675,900	25,219	549	1학기 7.30
					2학기 5.80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2010. 1. 15)를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기존 학자금 대출과 ICL의 차이

기존 학자금 대출은 소득 전 분위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4년간 4,000만원 이내의 등록금을 빌려주되, 거치기간 중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졸업 후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ICL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금 제한없이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물론 졸업 후 일정 기준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자격요건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이어야 했으나 ICL은 신용등급의 제한이 없다. 다만, 성적요건은 기존 학자금 대출이 C학점 이상인 반면, ICL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상환방법은 기존 제도가 일정한 상환기간(최장 10년) 내에 상환을 완료해야 하는 반면, ICL은 연간 최소 의무상환액을 설정하여 상환함으로써, 총 대출액을 생애에 걸쳐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인 자는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제도에 있었던 저소득층 이차보전은 ICL에서 폐지되어 저소득층도 이자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무상 지

급되었던 장학금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된다. 대신 소득 5분위 이하 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 ICL을 비교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 ICL 비교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수혜대상	소득 전 분위	소득 7분위 이하 (8분위 이상은 기존 제도 활용)
자격요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신입생, 졸업예정자 제외) 100점 환산 70점 이상(C학점) 신용등급 8등급 이상	B학점 이상
대출한도	1인당 4년간 4,000만원(학부 기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이차보전	3분위 이하는 무이자 4~5분위는 대출금리 중 4%p 감경 6~7분위는 대출금리 중 1%p 감경	없음
상환방법	거치기간 중 이자 납부 졸업과 동시에 상환의무 발생 (‘09년미취업자 상환 유예한시지원)	기준소득 발생 후 원리금 상환, 연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의무상환
상환기간	거치 및 상환기간 각각 최장 10년	기준소득 발생 후 (최장기간 없음) 65세 이상 일정 소득액 이하인자는 상환의무 면제
저소득층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연간 450만원 무상지원 - 차상위계층: 1인당 연간 230만원 무상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연 250만원 무상지원 - 소득 5분위 이하의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연간 1,000억원(총액) 지원
생활비 대출	1학기당 100만원 한도 저소득층 이차보전 적용	- 기본: 연간 200만원 한도 유지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환 의무 없음) - 소득 1~3분위: 거치기간 무이자 - 소득 4~5분위: 취업 후 상환 방식 - 소득 6~7분위: 일반대출 상환방식

3. 국회에서 수정된 사항

가. 저소득층 지원

기존 학자금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연간 45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230만원의 장학금을 무상 지급하였다. 2009년도 예산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약 52,000명에게 2,223억원이, 차상위계층 66,000명에게 710억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학자금 대출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무이자,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1.5~4%의 이차보전을 시행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주었다. 이에 비해 당초 정부가 제출한 ICL 원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연간 200만원을 무상지급하는 것 외에 저소득층 장학금 무상 지급이나 대출금 이차보전이 폐지되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⁸⁾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 중 무상 장학금 지급은 일부 내용을 유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현행대로 연 450만원(장학금 250만원, 생활비 200만원)을 무상지급하도록 수정하였다. 차상위계층 무상 장학금(연 230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도록 한 정부원안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1,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도록 수정하였다. 다만, 대출금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정부원안이 유지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이차보전이 폐지되므로,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한 저소득층도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8)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등.

[표 5] 저소득층 지원 관련 국회 수정내용

	기존 제도	ICL 원안	국회 수정안
무상지급	- 기초생활수급권자 연 450만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비 연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연간 450만원(장학금 250만원, 생활비 200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연 230만원	없음	- 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연간 1,000억원(총액) 지원
대출금 이차보전	- 기초생활수급권자 무이자 - 소득 1~3분위 무이자 - 소득 4~5분위 대출금리 중 4%p 지원 - 소득 6~7분위 대출금리 중 1.5%p 지원	없음	없음

나. 등록금 상한제의 병행 실시

ICL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쟁점은 등록금상한제 도입 문제였다.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상회하여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등록금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 시민단체, 대학생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표 6]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단위: 천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금	상승률	등록금	상승률	등록금	상승률	등록금	상승률	등록금	상승률
국공립대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4,190	0.5
사립대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7,420	0.5
물가상승률	2.8		2.2		2.5		4.7		3.9	

주: 2009년 물가상승률은 2009. 3월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2010년도 국가장학기금 기금운영계획(안).

등록금 상한제 주장의 근거는 ICL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등록금 조달여건이 개선되어 대학의 등록금 인상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한다. 또한 대출자의 상황이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등록금 대출이자를 국가가 대납하는 구조에서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개인의 부담을 넘어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금 상한제와 결합하여 ICL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⁹⁾

한편,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64.4%)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없이 등록금 상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표 7] 국내 대학의 재정수입 현황 및 비중(2007년 결산 기준)

(단위: 억원, %)

등록금 수입		전입금	기부금	국고 보조금	부대 수입	교육 외 수입	자산 및 부채 수입	전기이월 자금	총 계
등록금	단기수강료 제외시								
92,998	89,585	10,820	5,207	1,780	4,289	5,960	10,491	7,461	139,006
(66.9)	(64.4)	(7.8)	(3.7)	(1.3)	(3.1)	(4.3)	(7.5)	(5.4)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ICL의 도입으로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진다면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져 학교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휴학생은 약 90만명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군휴학 43만명을 제외하더라도 47만명이 휴학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2009년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3개월로 늘어났고, 대학 재학 중 39.3%가 휴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사유는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가 17.2%로 가장 많았고, 학비·생활비 마련이 12.6%를 차지하였다.

국회는 ICL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각 대학에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

9) 2010. 1. 1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등록금 상한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표 8] 등록금 상한제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내용

<p>[요 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학에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p>[고등교육법(2010. 1. 22 시행)]</p>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p> <p>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u>등록금심의위원회</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p> <p>④ 각 대학은 <u>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p> <p>⑥ <u>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p>

4. 해외 사례

현재 ICL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영국, 뉴질랜드 3곳이 있다. 미국은 2009. 7월 ICL 유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호주와 영국은 고등교육을 유상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국가 재정지출 절감에 목적을 두고 ICL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도입배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출 금리의 경우, 호주와 영국은 물가상승률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저소득층 이차보전을 병행하고 있다. 상환방식은 ICL을 시행하는 3개 국가 모두 기준소득 초과분의 9~10%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환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출금 회수 시점이 되는 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와 달리 일정 금액을 정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은 1.5만 파운드, 미국은 빈곤선의 150%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비에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출금 회수는 미국을 제외한 ICL 시행 국가 모두 국세청이 조세징수시스템을 통해 시행한다. 각 나라 ICL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9] 해외 ICL 사례

구분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IBR)
개요	도입배경	유상교육(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재정 절감 목적	좌동	기존대출방식에서 학생대출부담을 경감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완화
	도입시기	1989	1995	1992	2009. 7. 1.
	근거법률	고등교육지원법	고등교육법	학자금대출법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관리기관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분담	학자금관리공사 (SLC)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등 3개 기관에서 운영	연방교육부(FSA)
재정	보조방식	정부보조	정부보조	정부보조	-
	재원조달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
대출자격 및 조건	대출자격	모든 대학생	모든 대학생	모든 대학생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대출금액	등록금	3천파운드 내 수업료, 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대출금리	거치기간: 무이자 상환: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2.6% 수준)	거치기간: 무이자 상환: 국채수준 (최대 7%)	5% (저소득층 이차보전 병행)
	장학제도 병행	연방정부 장학프로그램 (교육부 예산의 2%)	무상장학금 후 잔액 ICL 대출	무상장학금과 공존	-
상환방법	회수주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조세체계와 연계하지 않음
	상환기간	10-12년(최대25년)	-	평균 10.3년('08)	최대 25년
	회수시점	일정소득 발생시 (국민소득중양치\$36,185)	기준소득 발생시 (1만 5천 파운드)	기준소득 발생시 (\$15,964)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선납제도	15%-25%할인 (선납시 이자)	없음	없음	없음
	상환방식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의무상환+ 자발적 상환	기준소득 초과분의 9%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재량소득의 15% 이하
	총상환 금액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상환능력 부재시	상환유예 및 면제 (저소득층, 파산 및 사망)	상환유예 (국가평균소득 85%이하인 자)	상환유예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Ⅲ. 정부추계 :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1. 정부추계의 전제

정부가 추계한 재정소요 및 채권발행규모(재정기준선)는 ICL 관계 의안의 국회통과 후 정부가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을 재추계한 값으로서, 2010. 1. 14.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이다. 정부추계에 적용된 변수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0] 정부추계 적용 변수

적용 변수	변수의 값
대출 인원	95.8만명
1인당 대출금액	800만원
등록금 인상률	3.0%
임금 인상률	5.5%
대출 금리	5.8%
평균 거치기간	8년
상환기준소득	1,592만원
상환율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
대출금 회수율	90%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재학생 중 기초수급자 100%, 소득 1~3분위 학생 50%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선택 ¹⁾

주: 1) 2010년 현재 재학생(2~4학년)은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 ICL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가. 대출 인원

정부는 전체 재학생 197.2만명의 48.6%에 해당하는 약 95.8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수혜 인원이 40.2

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0% 수준인데, ICL의 도입으로 학자금 대출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ICL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학생 대비 ICL 수혜 학생 비율¹⁰⁾은 호주 42.6%, 뉴질랜드 57%, 영국 8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수혜자 수 및 구성비

(단위: 만명, %)

	대상인원	현행 수혜자 수	신규 수혜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5.5	5.2 (94.5)	5.2 (94.5)
소득 1~3분위	43.0	12.8 (29.8)	30.2 (70.2)
소득 4~5분위	33.5	5.8 (17.3)	23.1 (69.0)
소득 6~7분위	37.4	4.6 (12.3)	25.5 (68.2)
소득 8~10분위	77.8	11.8 (15.2)	11.8 (15.2)
계	197.2	40.2 (20.3)	95.8 (48.6)

주: 괄호 안의 구성비 수치는 대상인원 대비 비율임.

나. 1인당 대출금액

정부는 1인당 ICL 대출금액을 800만원으로 가정하였다. ICL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실소요액이며,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이다. 정부가 1인당 대출금액을 800만원으로 가정한 것은 평균 대학 등록금액에 생활비를 고려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등록금의 평균값은 국·공립 및 사립대, 전문대의 등록금을 학생수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결과 연간 약 627만원으로 나타난다. 생활비는 1학기당 100만원씩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

10) <외국사례: ICL 수혜 인원>

(단위: 만명, %)

	호주(2005년)	영국(2004/2005)	뉴질랜드(2002)	미국(2006/2007)
전체학생	97	108	13	1,663
수혜학생	41	85	7	1,230
비율	43	80	57	74

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1인당 대출금액은 569만원이다. ICL이 대출금액을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으로 하고, 원리금 상환이 소득발생 시 까지 유예되는 등 상환조건이 현행 제도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출 금리도 ICL은 5%대로 예상되어 2009. 2학기를 제외하고 약 7%에 이르렀던 기존 학자금 대출보다 1% 이상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ICL 1인당 대출금액이 기존 학자금 대출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CL 대출재원이 되는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로서는 발행채권 규모를 최대치로 추정할 필요성이 있어 1인당 대출금액도 상한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 대학별 평균 등록금: 2009년

(단위: 만원)

	평균 등록금
국·공립대	419.0
사립대	742.0
전문대	517.2
평 균	627.0

주: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 및 사립대, 그리고 전문대의 등록금을 학생수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국공립 및 사립대는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는 ‘대학알리미’ 자료임.

다. 등록금 인상률

정부는 ICL 재정소요 추계에서 등록금 인상율을 3%로 가정하고 있다. ICL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되어 등록금 상승률을 직전 3개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1조). 따라서, 향후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추이에 연동될 것이다. 또한,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은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등록금 인상률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참고로, 최근 10년간(2000~2009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였다.

라. 대출금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매학기 대출 시작 전에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정부의 재정추계는 ICL의 금리를 연 5.8%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학자금을 직접 대출하기 시작한 2009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이다. 5.8%는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기 이전 금리이므로, 앞으로 정부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금리인하가 0.2~0.3% 수준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¹⁾

금리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정책금리를 적용하는 외국사례에 비해 5.8% 수준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있다. ICL 이율을 매학기 시장금리에 연동시켜 변경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ICL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참고로, ICL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 영국 등의 경우를 보면, 무이자 또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 13] 해외 ICL 시행 국가 적용금리

	호 주	영 국	뉴질랜드	미 국
적용금리	거치기간: 무이자 상환기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2.6% 수준)	거치기간: 무이자 상환기간: 국채수준	5%

자료: 2009 OECD 교육지표(www.oecd.org/edu/eag2009).

외국 사례와 같이 금리를 물가상승률 또는 정책금리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으로 이차보전을 해주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문제가 된다. 부수적으로, ICL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채무자가 최소 부담의무상환액만 상환하면서 상환기간을 장기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를 이용하여 상환시기를 늦춤으로써 미상환율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11) 교과부 2010년 예산안 설명자료.

한편, ICL의 재원을 민간발행 채권이 아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금리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2010 1. 15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 4.78%). 정부는 국채로 발행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액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어 국가채무액이 커지게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마. 거치기간

거치기간은 평균 8년으로 설계되었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남학생 군복무 기간, 졸업 후 취업시까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자금 대출제도의 평균 거치기간이 5~6년인데, ICL의 경우 거치기간 중 이자상환의무가 유예되는 등 상환조건이 보다 유리한 점을 감안하여 평균 거치기간을 현행 제도보다 다소 길게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상환기준소득은 채무자가 상환개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9조제5항). 정부추계에서 상환기준소득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연간 1,592만원)의 100% 수준, 상환율은 연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로 설정하고 있다.

사. 대출금 회수율

정부는 대출금 회수율을 90%로 가정하고 있다. 다만, 90%라는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해 국세 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자에게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원리금 강제상환이 개시되며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사업소득자는 신고납부를 통해 징수한다.

[표 14] 소득별 상환시기 및 징수방법

소득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율
종합소득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납부	연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근로소득 연금소득	매월 납부	연말정산(3.10일) 후 월납부액 국세청이 통지(6월) 원천공제(7월부터)	연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의 20%
양도소득	소득신고시	신고·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상속·증여시	소득신고시	신고·납부	과세표준의 20%

- 주: 1.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합산.
 2. 상 환 액 = (소득금액 - 기준소득) × 상환율.
 3. 소득금액과 기준소득 모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실제 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상환기준소득을 4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상환율을 20%로 가정할 때 소득구간별 의무상환액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5] 총급여액별 근로소득공제액 및 의무상환액(소득세법 제47조)

(단위 : 만원)

총급여액 (a)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액 (b)	소득금액 (c=a-b)	기준소득 (d)	연간 의무상환액 (c-d)×20%
500	400(총급여액의 100분의 80)	100	678	-
1,000	650 = 400 + (1,000 - 500) × 50%	350	678	-
1,500	900 = 400 + (1,500 - 500) × 50%	600	678	-
1,592	914 = 900 + (1,592 - 1,500) × 15%	678	678	-
1,800	945 = 900 + (1,800 - 1,500) × 15%	855	678	35
2,000	975 = 900 + (2,000 - 1,500) × 15%	1,025	678	69
2,500	1,050 = 900 + (2,500 - 1,500) × 15%	1,450	678	154
3,000	1,125 = 900 + (3,000 - 1,500) × 15%	1,875	678	239
4,000	1,225 = 1,125 + (4,000 - 3,000) × 10%	2,775	678	419
4,500	1,275 = 1,125 + (4,500 - 3,000) × 10%	3,225	678	509
5,000	1,300 = 1,275 + (5,000 - 4,500) × 5%	3,700	678	604
10,000	1,550 = 1,275 + (10,000 - 4,500) × 5%	8,450	678	1,554
20,000	2,050 = 1,275 + (20,000 - 4,500) × 5%	17,950	678	3,454

주: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 - 기준소득) × 상환율

* 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자)

* 기준소득 : 총급여 1592만원은 기준소득 환산시 소득금액 678만원에 해당

* 상환액 산출 예(소득금액 기준 적용) :

채무자의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1,025 - 678) × 20% = 69만원

이는 총급여 기준 적용(2000 - 1592) × 20% = 82만원 보다 약 13만원 낮은 금액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장기미상환자(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0배¹²⁾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개시한다. 상환개시 후 일정 기간(1년) 미상환할 경우 의무상환액을 강제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 전액에 대해 ICL 효력을 정지, 전액 상환의무를 개시하며,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 제공과 함께 일반대출로 전환한다.

12) 미혼 1.5배, 기혼 2.0배이다.

해외이주자에 대해서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제공과 함께 일반대출로 전환한다. 해외유학생에 대해서는 출국 40일 전까지 상환계획을 신고하도록 담보제공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ICL 채무는 개인이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아.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ICL은 2010. 1학기부터 시작되는데, 2010년 현재 재학생(2~4학년)은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 ICL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신입생은 ICL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정추계에서 재학생 중 기초수급자는 100%, 소득 1~3분 위 학생은 50%가 현행 제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정부추계(재정기준선) 결과: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가. 재정소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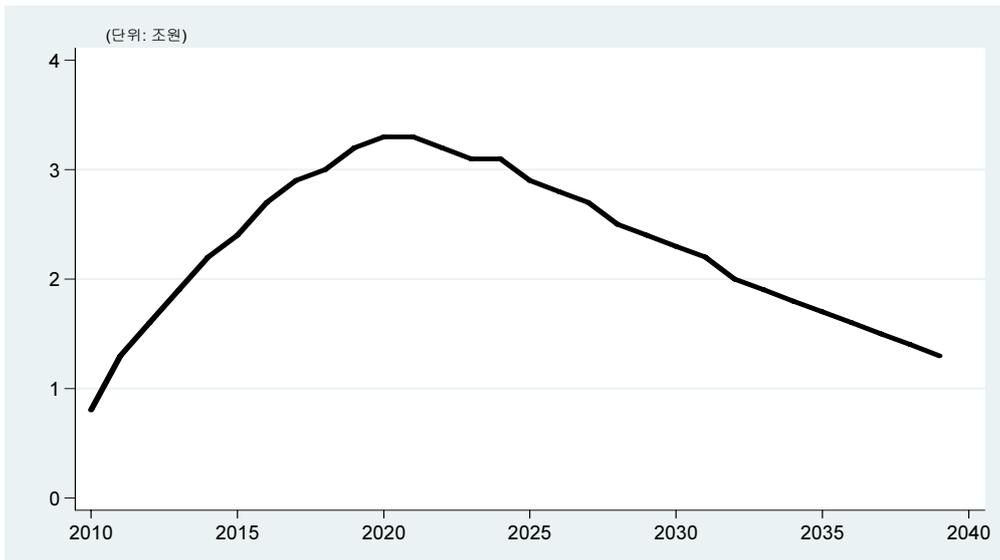
ICL 제도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을 얻어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의 이자는 국가가 대납하므로,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정부가 추계한 총 재정소요액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 8,222억원(국회확정 예산액)을 시작으로, 2010~2014년간 연평균 1.6조원, 2015~2019년간 연평균 2.8조원, 2020~2024년간 연평균 3.2조원 수준이며, 연도별 재정소요액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3.3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39년 1.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존 학자금 대출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ICL 도입으로 인한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0년 3,205억원, 2010~2014년간 연평균 8,770억원, 2015~2019년간 연평균 1조 9,080억원, 2020~2024년간 연평균 1조 9,107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6] ICL 도입에 따른 연평균 정부부담 재정소요액(정부추계)

(단위: 억원)

	2010년	2010~2014년간 연평균	2015~2019년간 연평균	2020~2024년간 연평균
현행 대출제도 유지(A)	5,017	6,876	9,310	12,966
ICL 도입(B)	8,222	15,646	28,390	32,103
재정 추가 소요액(B-A)	3,205	8,770	19,080	19,107

[그림 1]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정부추계: 재정기준선): 2010~2039년



나. 채권발행규모

학자금 대출 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로 조달한다.¹³⁾ 정부추계에 따르면, ICL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의 규모는 2011~2015년간 연평균 5.5조원 수준이며, 여기에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¹⁴⁾를 위한 채권발행액 1.6조원까지 합산하면 동 기간 신규 채

13) ICL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가 지급보증하도록 하였다.

권발행액 규모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7.1조원 수준이며, 2015~2020년간에는 2.9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발행 누계총액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점인 2020년 58.3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39년에 2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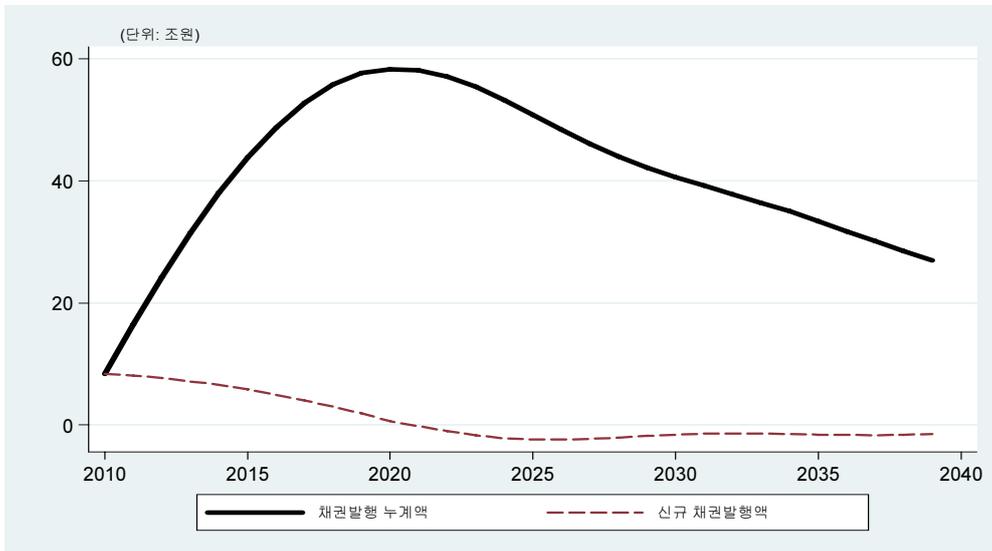
[표 17] 학자금 대출 연평균 신규 채권발행액 규모: 정부추계

(단위: 억원)

	2010년	2011~2015년간 연평균	2016~2020년간 연평균
ICL 소요 자원	55,472	55,139	26,702
기존 대출 소요 자원	28,712	15,647	2,232
총 액	84,184	70,786	28,93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그림 2] 채권발행액 추이(정부추계: 재정기준선): 2010~2039년



- 14) ICL은 소득 1~7분위 대학생에게,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8분위 이상 대학생에게 시행된다.
- 15) 채권발행 누계총액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과 신규 채권발행액이 0이 되는 시점은 일치한다. 누계총액이 정점에 달한 2020년 이후에는 신규 채권발행보다는 대출금 상환액이 신규 대출수요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IV. NABO 추계: 정책변수별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1. 추계 변수

본 장에서는 ICL 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대출금리, 대출대상자(학점기준), 상환기준소득, 상환율, 회수율 등 6가지 변수의 조건이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도록 한다. 각 변수의 쟁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추계와 다른 가정을 설정했을 때 재정소요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정부추계치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군복무기간 이자면제’라는 변수를 신규로 추가하여 추계하였다. 대출금리는 5.22%로 하향조정했을 경우, 대출대상자는 현행 B학점자에서 C학점자로 확대했을 경우, 상환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50%로 확대했을 경우, 그리고 상환율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질 경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소요액을 추계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수율은 현행 90%에서 85%로 5%p 하향조정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한편, 본 추계에서는 추계대상을 재정소요액뿐만 아니라, 재정소요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채권발행 누계총액¹⁶⁾도 추계대상에 포함하였다. 2장에서는 각 정책변수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를 가정한 구체적인 추계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16) ICL 제도의 주요재원으로서 발행되는 채권은 대납이자 등의 정부부담 재정소요를 수반하게 되며, 채권발행 누계총액 규모가 클수록 재정소요도 커지게 된다.

[표 18] 주요 정책변수 및 변수의 값

주요 정책변수	변수의 값	
	현행 제도	안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없음	있음
대출금리	5.80%	5.22%
대출대상자	B 학점	C 학점
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 100%	최저생계비 150%
상환율	20%	10%
회수율	90%	85%

2. 정책변수별 추계결과

가.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가정 시

(1) 쟁 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복무를 하게 되면 여학생이나 군면제자 등 군미필자보다 군복무기간만큼 취업이 늦어져 대출금에 대한 거치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주지 않으면 국방의무를 다한 군필자가 군면제자 등 미필자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의무복무 입대인원은 연평균 28.9만명이다(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현역병의 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은 82.7%, 공익근무요원의 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은 78.3%이므로, 이를 가중 평균하면 전체 의무복무 인원의 82.3%가 대학 이상의 학력자이다. 따라서, 매년 입대 인원 중 23만 8천명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인원이 된다. 이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액을 추계하도록 한다.

(2) 추계 결과

대출자의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군복무기간 동안의 이자면제에 따르는 추가 재정소요는 예산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동 재원을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할 경우 채권 관리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군복무기간 동안의 이자면제에 따르는 채권발행액은 정부추계치와 차이가 없으며, 단지 재정소요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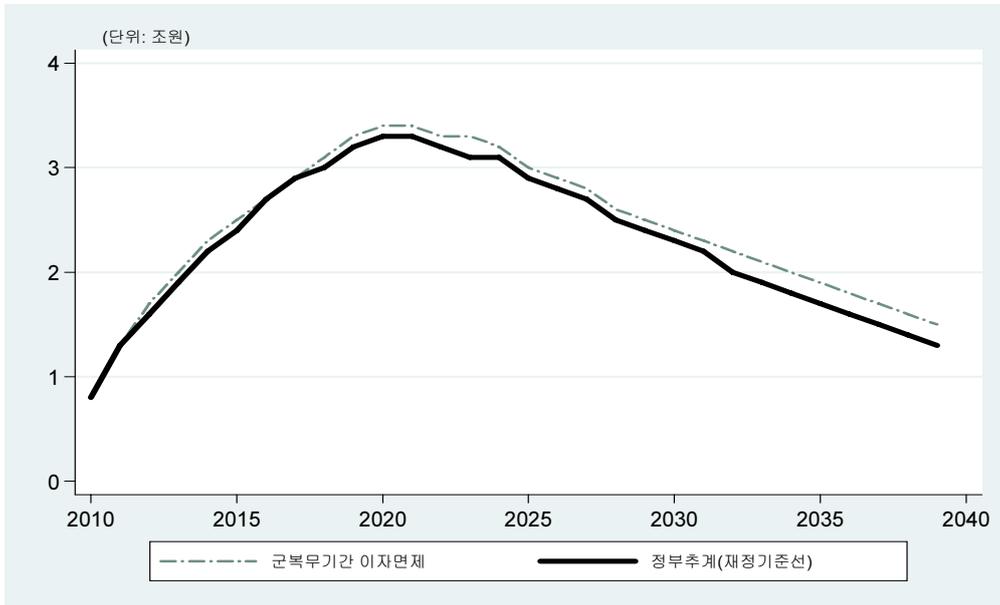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할 경우, 정부추계치(재정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소요액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239억원에서 2039년 1,63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재정소요액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추계와 마찬가지로 2020년 3.4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지만, 추가 재정소요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가 반영되어 추계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추계치와의 총 재정소요액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군복무기간 이자면제(A)	13,170	25,136	33,882	30,439	24,037	18,733	14,864
정부추계(B)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추가 재정소요액(A-B)	239	806	933	1,081	1,253	1,452	1,635

[그림 3]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010~2039년



나. 대출금리 5.22% 적용 시

(1) 쟁점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최근 학자금 대출금리 5.8%가 높다는 의견이 있다. ICL 재원이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되므로 대출 금리는 채권 조달 금리에 연동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과 학기기술부장관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1조), ICL 대출금리는 매 학기 변동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⁷⁾

정부추계의 대출금리 5.8%는 다른 정부보증채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금리가 5.22%(2010. 1. 19. 기준)¹⁸⁾인 것에 비해 0.58%p 높게 설정되어 있다. 5.8%의 금리는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정부의 지급보증이 이루어

17) 정부는 2010. 1학기 ICL 대출금리를 5.7%로 발표하였다(2010. 1. 22).

18) 민간채권평가 3사의 평균 금리이다.

지기 전인 2009년 2학기 대출 금리이므로, 향후 장학재단 채권의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정부보증채로서 채권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면 다른 정부보증채와 같은 수준의 금리인하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추계 결과

대출금리를 5.22%로 하향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 누계총액의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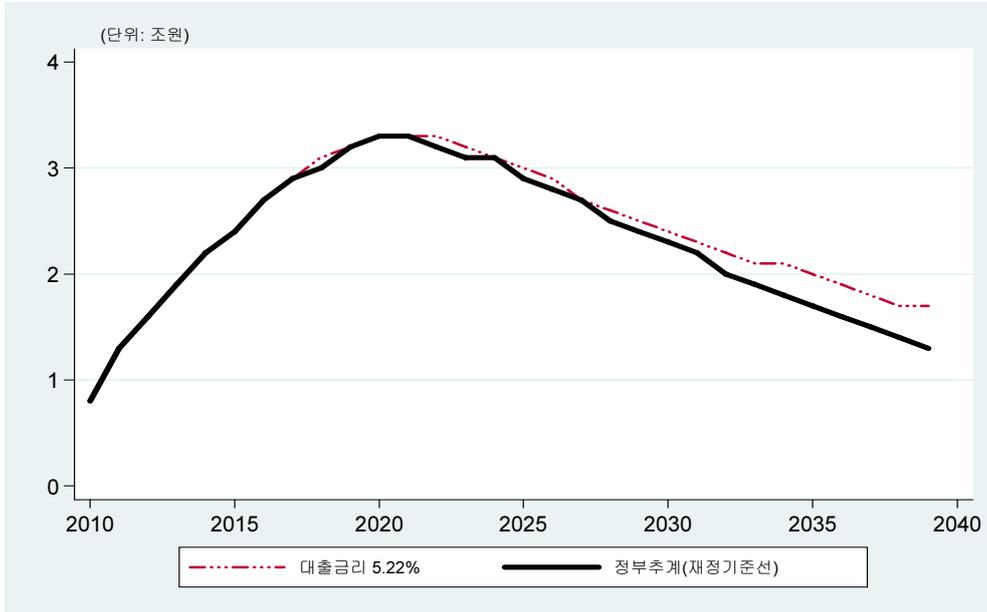
먼저,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은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20억 원에서 2039년 3,29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재정소요액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3.3조원)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추가 재정소요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가 반영되어 추계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추계치와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요인은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채권발행 누계총액의 증가를 초래하여 대납이자 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0]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대출금리 5.22%):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대출금리 5.22%(A)	12,951	24,418	33,173	29,926	24,253	19,930	16,521
정부추계(B)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추가 재정소요액(A-B)	20	88	224	568	1,469	2,649	3,292

[그림 4]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대출금리 5.22%): 2010~20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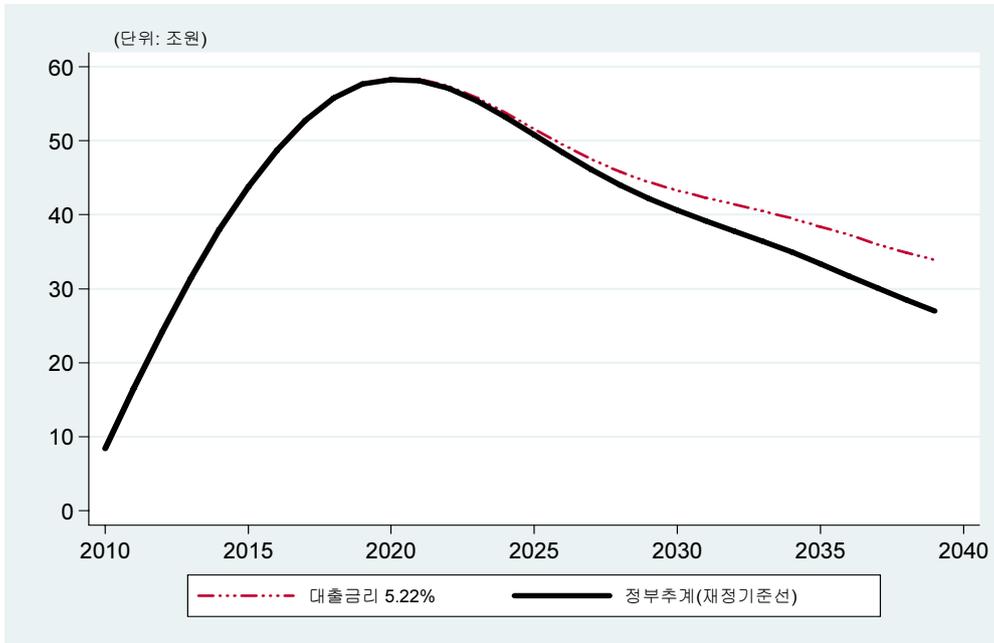
한편, 대출금리 하향조정시 추계치와 정부추계치의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 총액 차이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2억원에서 2039년 6.8조원으로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발행 누계총액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58.4조원)을 정점으로 정부추계치보다 완만하게 감소하지만, 누계총액 차이의 지속적인 증가가 반영되어 정부추계치와의 격차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총액(대출금리 5.22%):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대출금리 5.22%(A)	165,463	438,235	584,270	516,372	432,924	384,346	338,572
정부추계(B)	165,461	438,112	582,782	508,065	406,410	333,882	270,080
채권발행 누계총액 차이(A-B)	2	123	1,488	8,307	26,514	50,464	68,492

[그림 5]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대출금리 5.22%): 2010~2039년



다. 대출대상자(학점기준) C학점까지 확대 시

(1) 쟁 점

ICL 성적요건은 당초 정부원안이 C학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B학점까지로 상향조정되었다. 원안에서는 신입생에 대한 성적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수능 6등급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성적요건이 C학점까지 적용되고, ICL에 대한 사전홍보에서도 성적기준을 C학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왔기 때문에 성적요건 상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추계에서는 ICL 성적기준을 C학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자 한다.

[표 22]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분포(2008년)

수능등급		1	2	3	4	5	6	7	8	9
신입생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계)	(4%)	(11%)	(23%)	(40%)	(60%)	(77%)	(89%)	(96%)	(100%)
재학생	A 학점	(40.8%)								
	B 학점	(75.2%)								
	C 학점	(90.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 추계 결과

대출대상자를 C학점으로 확대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 누계총액의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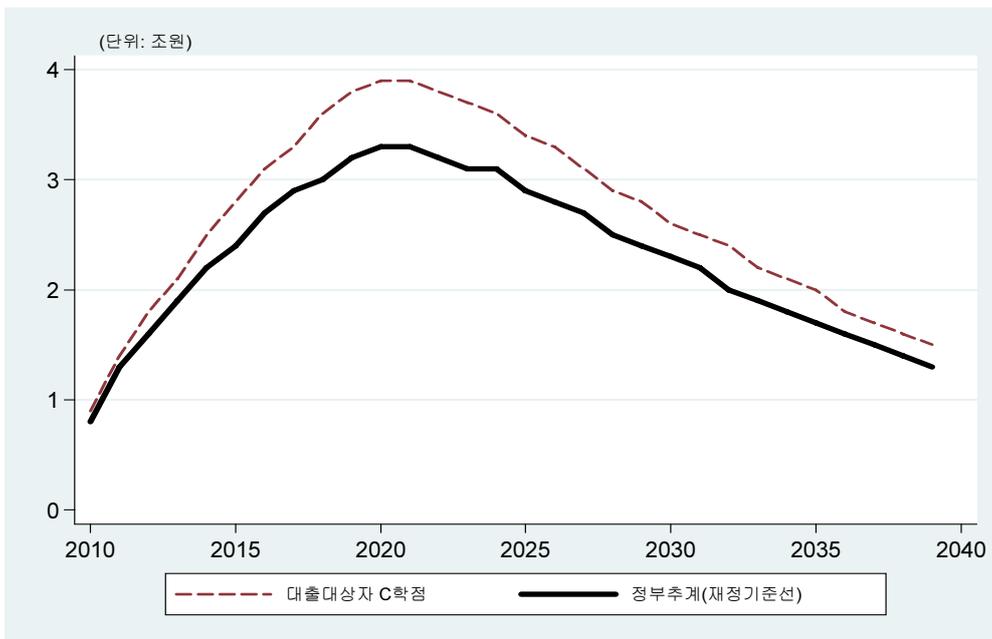
첫째,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1,055 억원에서 2020년 5,706억원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가 재정소요액 추이가 반영되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재정소요액도 정점에 달하는 2020년(3.9조원)까지 정부추계치와의 격차가 커지다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이의 주요요인은 대출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채권발행 누계총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채권 대납이 자에 대한 정부부담 재정소요가 커지지만, 재정소요가 정점에 달한 이후에는 증가된 대출대상자의 취업 후 상환액도 커지기 때문에 재정소요액도 정부추계치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3]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대출대상자 C학점):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대출대상자 C학점(A)	13,986	28,050	38,655	34,417	26,366	19,691	14,701
정부추계(B)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추가 재정소요액(A-B)	1,055	3,720	5,706	5,059	3,582	2,410	1,472

[그림 6]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대출대상자 C학점): 2010~2039년



둘째, 대출대상자 확대시 추계치와 정부추계치의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총액 차이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2.3조원에서 2020년 9.5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발행 누계총액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67.7조원)까지 정부추계치와의 격차가 커지다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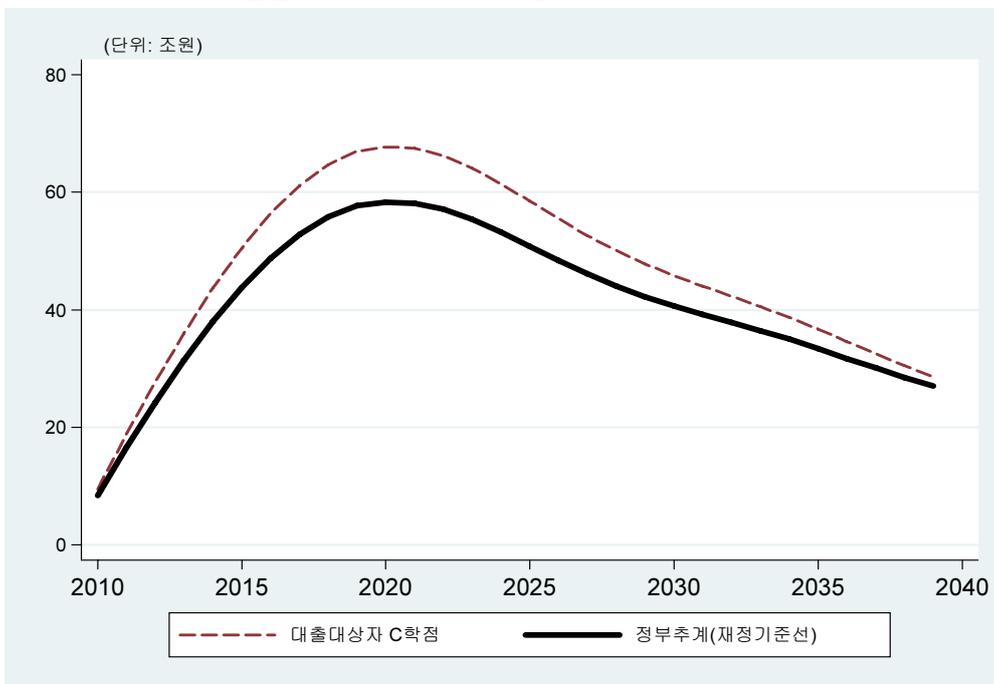
[표 24]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총액(대출대상자 C학점):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대출대상자 C학점(A)	188,455	505,490	677,324	584,639	458,478	366,790	286,357
정부추계(B)	165,461	438,112	582,782	508,065	406,410	333,882	270,080
채권발행 누계총액 차이(A-B)	22,994	67,378	94,542	76,574	52,068	32,908	16,277

[그림 7]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대출대상자 C학점): 2010~2039년

(단위: 조원)



라. 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적용 시

(1) 쟁 점

상환기준소득은 ICL의 의무상환이 개시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한다(「취

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5항). 정부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 (연간 1,592만원)로 예정하고 있다.

상환기준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의 대출금 회수는 용이해지는 반면,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커지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무거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환기준소득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¹⁹⁾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본 추계에서는 상환기준소득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규모를 추계하고자 한다.

(2) 추계 결과

상환기준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 재정소요액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2030년 7,025억원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총 재정소요액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2025년 사이에 정점(약 3.6조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 재정소요액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와 총 재정소요액이 정점이 달하는 시기가 다른 이유는 총 재정소요액 추계치가 정부추계치보다 2020~2030년 사이에 완만하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 「참여연대」의 의견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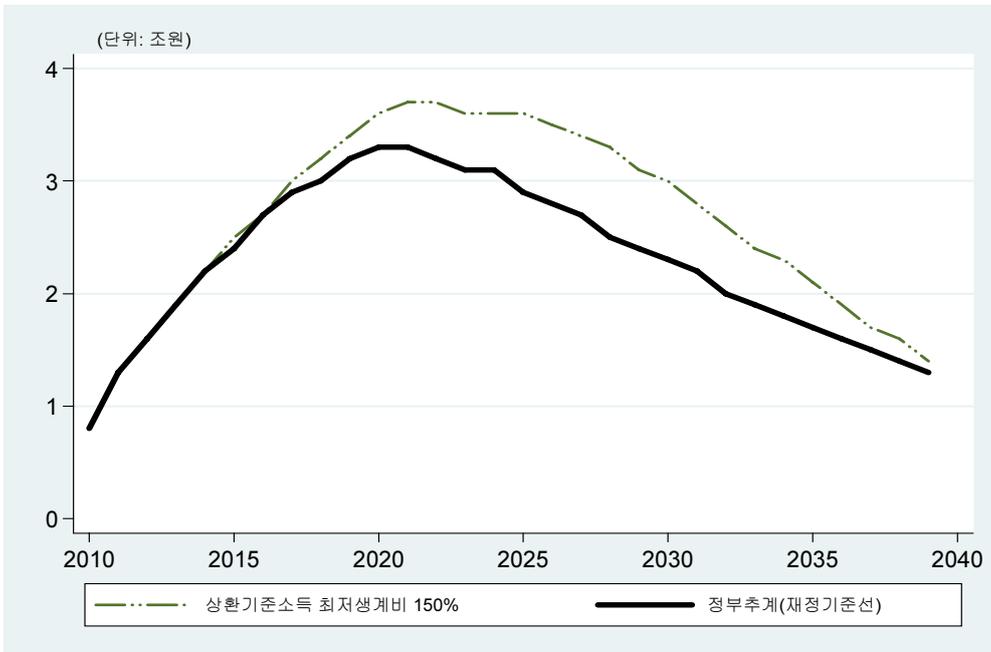
20) 이러한 추이를 보이는 주요요인은 대출 상환기준소득 범위의 확대가 대출자의 상환액 규모를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환기준소득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대출액 규모에는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재정소요액이 추계기간 초기에는 정부추계치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 대출자의 취업과 상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상환기준소득 범위 확대에 따른 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게 되면, 채권발행 누계총액 증가로 이어져 채권 대납이자에 대한 정부 재정소요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5]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 15%):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상환기준소득 150%(A)	12,931	24,769	35,738	35,744	29,809	20,855	14,112
정부추계(B)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추가 재정소요액(A-B)	-	439	2,789	6,386	7,025	3,574	883

[그림 8]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 15%): 2010~20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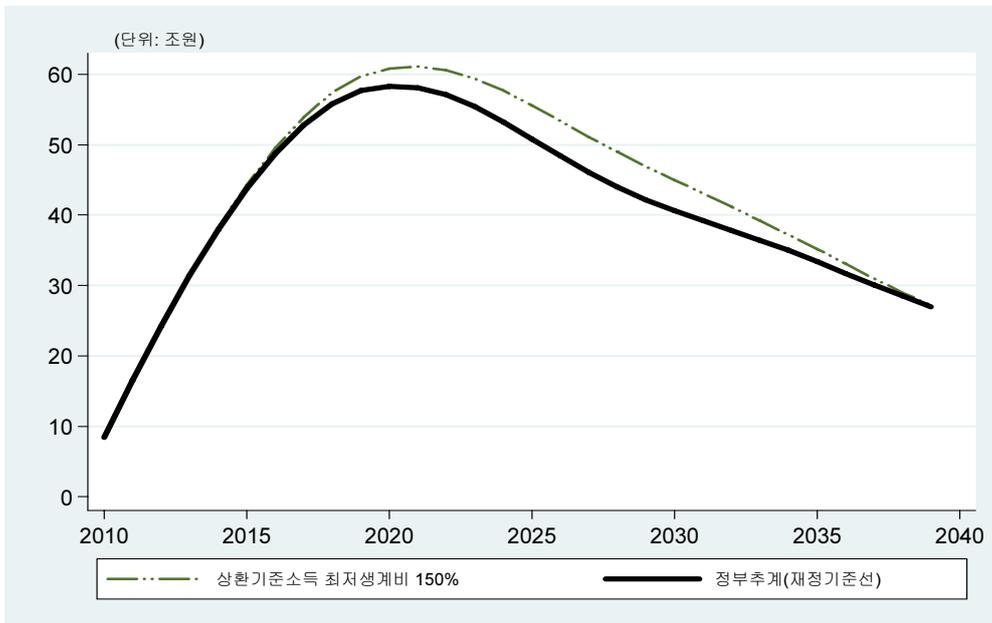


둘째, 채권발행 누계총액 차이를 [표 26]를 통하여 보면, 총 재정소요액 추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추계치와의 격차는 2025~2030년 사이(약 11.8조원)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이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발행 누계총액이 정부추계치보다 2020~2030년 사이에 완만하게 감소하여 정부추계치와의 누계총액 차이가 정점에 달하는 시점과 누계총액이 정점이 달하는 시점이 다른 주요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6]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총액(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상환기준소득 150%(A)	165,889	449,906	641,391	626,185	524,160	388,842	278,863
정부추계(B)	165,461	438,112	582,782	508,065	406,410	333,882	270,080
채권발행 누계총액 차이(A-B)	428	11,794	58,609	118,120	117,750	54,960	8,783

[그림 9]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2010~2039년



마. 상환율 10% 적용 시

(1) 쟁 점

상환율은 채무자의 연간소득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 중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비율로서, 법률에서 20%로 규정하고 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2항).

상환율이 높을수록 국가의 대출금 회수는 용이해지는 반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은 커지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환율을 1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²¹⁾이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상환율을 10%로 하향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규모를 추계하고자 한다.

(2) 추계 결과

상환율을 10%로 하향조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 재정소요액은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2025~2030년 사이에 1.2조~1.8조원으로 지속적이고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정부추계의 경우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재정소요액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2020년인데 반해, 상환율을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5년 정도 늦고, 정점에 달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²⁾ 이러한 추이는 동 변수의 변경시 추가 재정소요액이 여타 정책변수 추계치보다 크게 나타나는 주요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7]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상환율 10%): 2011~20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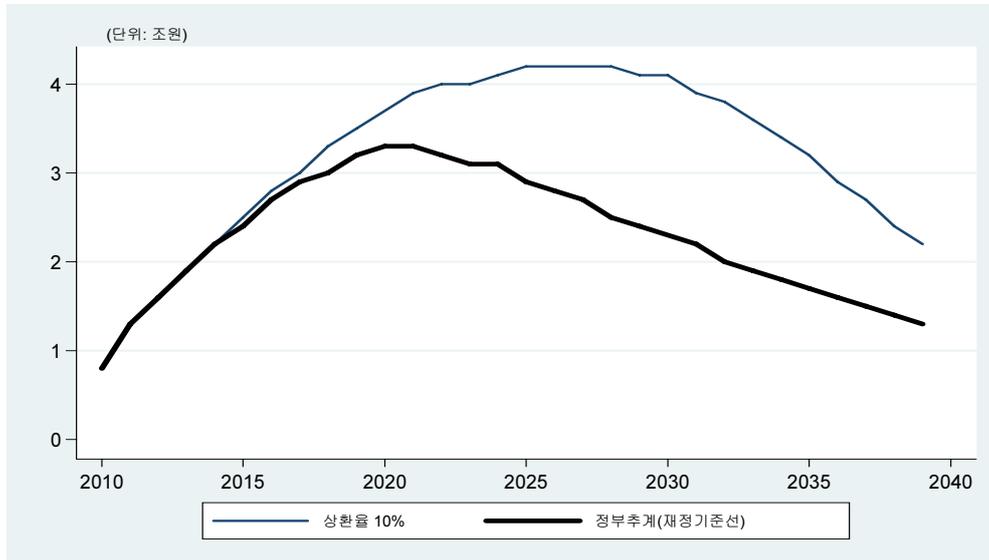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상환율 10%(A)	12,931	24,935	37,388	41,692	40,549	31,715	21,668
정부추계(B)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추가 재정소요액(A-B)	-	605	4,439	12,334	17,765	14,434	8,439

21) 「참여연대」의 의견이다.

22) 상환율을 하향하면 상환액의 감소로 채권발행 누계총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정부 재정으로 지불하는 채권 대납이자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림 10]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상환율 10%): 2010~20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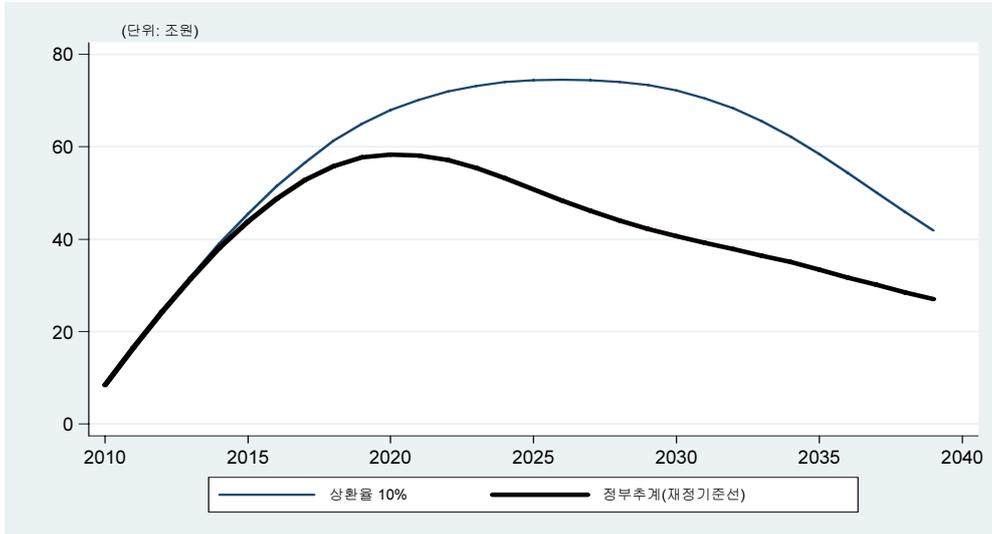
둘째, 채권발행 누계총액 차이도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547 억원에 불과하나, 2030년에 31.5조원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전술한 재정소요액 추이와 마찬가지로 채권발행 누계총액이 정점이 달하는 시기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추계치(2020년 58.3조원) 보다 5년 정도 늦고(2025년 74.4조원),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계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8] 연도별 채권발행 누계총액(상환율 10%):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상환율 10%(A)	166,008	454,672	678,599	744,039	721,685	583,818	419,387
정부추계(B)	165,461	438,112	582,782	508,065	406,410	333,882	270,080
채권발행누계총액 차이(A-B)	547	16,560	95,817	235,974	315,275	249,936	149,307

[그림 11]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상환율 10%): 2010~2039년



바. 회수율 85% 적용 시

(1) 쟁점

정부가 ICL 대출금 회수율을 90%로 전망하는데 있어서 근거는 분명치 않다. 무담보 대출인 ICL의 회수율은 일차적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리 ICL은 조세징수 시스템을 활용한 강제집행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회수율 제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ICL 채무자가 일정한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최소의무상환액을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공제를 하므로 강제징수를 담보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취업을 통해 임금이 발생해야 대출금을 원천공제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취업률을 살펴보면 임시직을 포함하더라도 67.7% 수준이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공제를 하므로 어느 정도 강제징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를 통해 징수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징수율, 즉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67.1%에 불과하다.

[표 29] 최근 취업률 및 종합소득세 징수율

(단위: %)

	2007	2008	2009
정규직취업률	56.80	56.10	48.30
정규직+자영업취업률	58.37	57.72	49.94
정규직+임시직+자영업	69.21	68.42	65.59
국세징수율(종합소득세 징수율)	73.30	62.70	67.10

자료: 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정하고 있는 90%의 회수율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 ICL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도달해야 하는 정책적 목표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84%), 고학력실업 문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 파악 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은 ICL 대출금 회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ICL 제도는 채권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부담과 이자대납분 등 중장기적 재정소요를 수반하므로 대출금 회수율이 저하되면 재정부담이 정부의 예상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본 추계에서는 회수율을 하향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가 가정하고 있는 90%에서 임의적으로 5%p를 하향조정할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2) 추계 결과

회수율을 85%로 하향조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액은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1,515억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 재정소요액은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3.4조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되, 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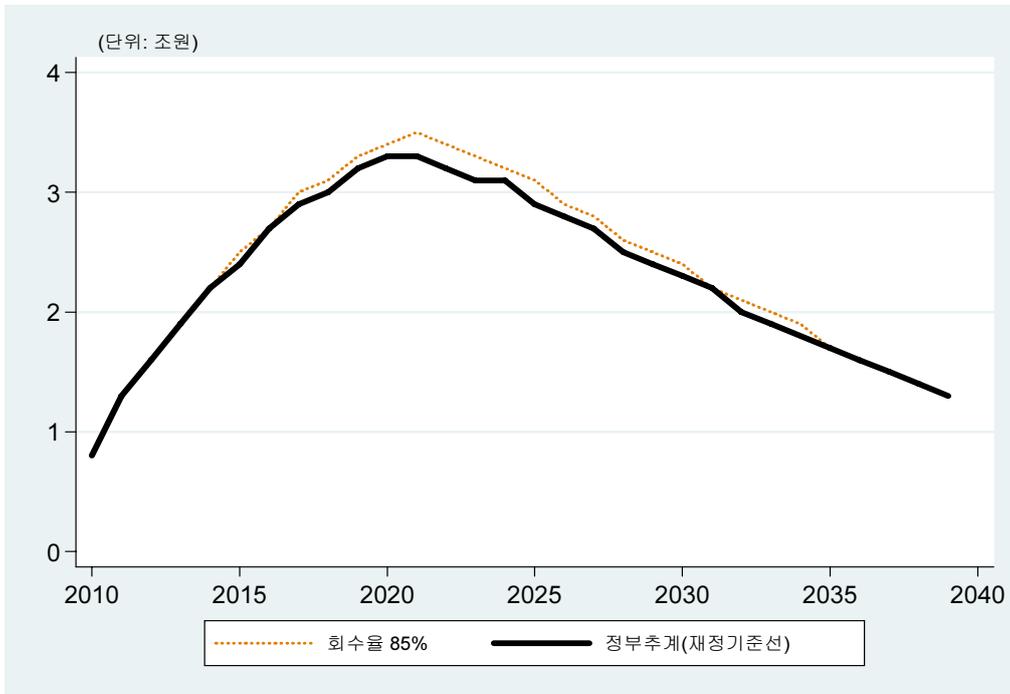
23) 회수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대손액 증가에 따른 추가 채권발행과 이에 따른 대납이자 증가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추계치보다 정부부담 재정소요액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추계에서는 이러한 추가 채권발행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단지 회수율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대손 및 대위변제액 증가와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만을 추계하였다.

[표 30] 연도별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회수율 85%):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회수율 85%(A)	12,931	25,134	34,464	30,808	23,648	17,473	13,229
정부추계(B)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추가 재정소요액(A-B)	-	804	1,515	1,450	864	192	-

[그림 12]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회수율 85%): 2010~2039년



V. 결론 및 시사점

본 추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계한 정부부담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 누계총액(재정기준선)을 검토한 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6개 변수의 조건이 변동하는 경우에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 누계총액을 추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부담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 누계총액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채권 대납이자 및 기타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재정소요액은 2011~2015년간 연평균 1.9조원, 2016~2020년간 연평균 3.0조원으로 증가하며, 연도별 재정소요액은 2010년 0.9조원(국회확정예산액)을 시작으로, 2020년 3.3조원을 정점에 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39년 1.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존 학자금 대출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ICL 도입으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소요는 2010년 3,205억원, 2010~2014년간 연평균 8,770억원, 2015~2019년간 연평균 1조 9,080억원, 2020~2024년간 연평균 1조 9,10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재원조달을 위한 신규 채권발행규모는 2010년 8.4조원, 2011~2015년간 연평균 9.6조원 수준에 이르렀다가 2016~2020년간 연평균 3.6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발행 누계총액의 경우, 2020년에 정점인 58.3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39년에 2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31] ICL 도입에 따른 연평균 정부부담 재정소요액: 정부추계

(단위: 억원)

	2010년	2010~2014년간 연평균	2015~2019년간 연평균	2020~2024년간 연평균
현행 대출제도 유지(A)	5,017	6,876	9,310	12,966
ICL 도입(B)	8,222	15,646	28,390	32,103
재정 추가 소요액(B-A)	3,205	8,770	19,080	19,10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표 32] 학자금 대출 연평균 채권발행규모: 정부추계

(단위: 억원)

	2010년	2010~2015년간 연평균	2016~2020년간 연평균
ICL	55,472	70,786	28,934
현행 대출	28,712	25,055	6,695
총 액	84,184	95,841	35,62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다음으로, 정부추계(재정기준선)를 토대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대출금리, 대출대상자(C학점), 상환기준소득, 상환율, 대출금 회수율 등 쟁점이 되고 있는 6개 주요 정책변수의 조건이 변동할 경우에 발생하는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계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치가 과소한 변수별 순서(2020년 기준)는 [표 3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출금리, 군복무 이자면제, 회수율, 상환기준소득, 상환율, 대출대상자 순이다. 추가 재정소요액의 규모별 순서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2030년 이전까지는 그 규모가 작으나 2030년 후반에는 여타 변수별 추계치보다 큰 것으로 추계되었다(2039년 3,292억원).²⁴⁾ 제도 시행 후 초반 10년(2020년까지) 동안은 ‘대출대상자(학점기

준) 확대'시 추가 재정소요액이 가장 크며(2020년 5,706억원), 2021년 이후 2030년까지는 '상환율 변경'(2030년 1.8조원)과 '상환기준소득 변경'(2030년 7,025억원) 순으로 추가 재정소요액이 큰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33] 정부부담 추가 재정소요액: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정부추계 총 재정소요액(A)]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변수 변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239	806	933	1,081	1,253	1,452	1,635
대출금리 5.22%	20	88	224	568	1,469	2,649	3,292
대출대상자 C학점	1,055	3,720	5,706	5,059	3,582	2,410	1,472
상환기준소득 150%	-	439	2,789	6,386	7,025	3,574	883
상환율 10%	-	605	4,439	12,334	17,765	14,434	8,439
회수율 85%	-	804	1,515	1,450	864	192	-

둘째, 추가 재정소요액을 반영한 총 재정소요액의 경우, '상환율 변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별 추계치가 [표 34]와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에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이 과소한 변수별로 순서(2020년 기준)를 보면, '대출금리 변경' 3.3조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및 '회수율 변경' 각각 3.4조원, '상환기준소득 변경' 3.6조원 수준이다. '상환율 변경'의 경우, 총 재정소요액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은 여타 변수별 추계치보다 5년 정도 늦고 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4.2조원). 또한 대출대상을 C학점자로 확대할 경우에는 2020년까지 초반 10년 동안의 재정소요액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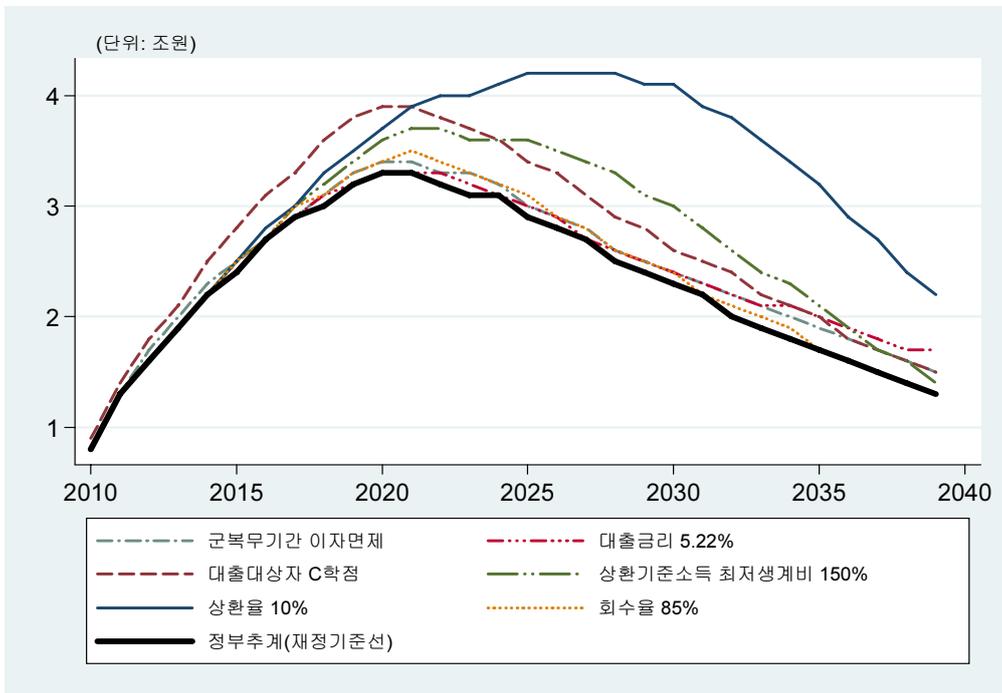
24) 대출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수반되는 대출인원 증가(본 추계에서는 배제됨)를 고려하면, 2030년 이전의 추가 재정소요액은 본 추계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표 34] 주요 정책변수별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정부추계 총 재정소요액(A)]	12,931	24,330	32,949	29,358	22,784	17,281	13,229
[변수 변경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A+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13,170	25,136	33,882	30,439	24,037	18,733	14,864
대출금리 5.22%	12,951	24,418	33,173	29,926	24,253	19,930	16,521
대출대상자 C학점	13,986	28,050	38,655	34,417	26,366	19,691	14,701
상환기준소득 150%	12,931	24,769	35,738	35,744	29,809	20,855	14,112
상환율 10%	12,931	24,935	37,388	41,692	40,549	31,715	21,668
회수율 85%	12,931	25,134	34,464	30,808	23,648	17,473	13,229

[그림 13] 주요 정책변수별 정부부담 총 재정소요액 추이: 2010~2039년



셋째, ICL 제도의 주요재원으로서 발행되는 채권은 대납이자²⁵⁾ 등의 정부 부담 재정소요를 수반하게 되며, 채권발행 누계총액 규모가 클수록 재정소요도 커지게 된다. 채권발행 누계총액이 과소한 변수별 순서(2020년 기준)를 보면, ‘대출금리 변경’ 58.4조원, ‘상환기준소득 변경’ 64.1조원, ‘대출대상자 변경’ 67.7조원, ‘상환율 변경’ 67.9조원 수준이다. ‘상환율 변경’시 누계총액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은 여타 변수별 추계치보다 5년 정도 늦고 규모도 가장 크다. 대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2020년까지 초반 10년 동안의 누계총액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전술한 총 재정소요액 추이와 동일하다. 한편, 본 추계는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및 회수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권발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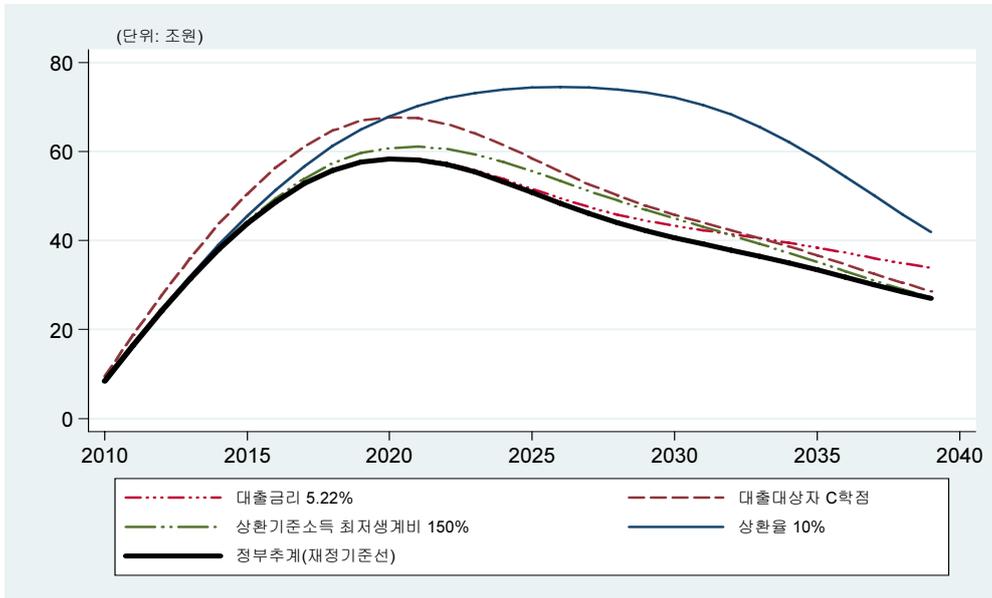
[표 35] 주요 정책변수별 채권발행 누계총액: 2011~2039년

(단위: 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39
[정부추계채권발행누계총액(A)]	165,461	438,112	582,782	508,065	406,410	333,882	270,080
[변수 변경에 따른 채권발행 누계총액 차이(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	-	-	-	-	-
대출금리 5.22%	2	123	1,488	8,307	26,514	50,464	68,492
대출대상자 C학점	22,994	67,378	94,542	76,574	52,068	32,908	16,277
상환기준소득 150%	428	11,794	58,609	118,120	117,750	54,960	8,783
상환율 10%	547	16,560	95,817	235,974	315,275	249,936	149,307
회수율 85%	-	-	-	-	-	-	-
[변수 변경에 따른 채권발행 누계총액(A+B)]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	-	-	-	-	-
대출금리 5.22%	165,463	438,235	584,270	516,372	432,924	384,346	338,572
대출대상자 C학점	188,455	505,490	677,324	584,639	458,478	366,790	286,357
상환기준소득 150%	165,889	449,906	641,391	626,185	524,160	388,842	278,863
상환율 10%	166,008	454,672	678,599	744,039	721,685	583,818	419,387
회수율 85%	-	-	-	-	-	-	-

25) 대출자가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할 시점까지 정부가 채권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게 되며, 누계총액 규모가 클수록 대납이자 규모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림 14] 주요 정책변수별 채권발행 누계총액 추이: 2010~2039년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룬 정책변수 이외에, ICL과 관련한 정부부담 재정소요와 채권발행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서 등록금 인상률을 들 수 있다. 정부추계는 등록금 인상률을 3%로 가정하고 있다. ICL과 병행하여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므로, 향후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된다. 향후 등록금이 법적 상한선 내에서 실제로 얼마나 인상될지는 대학의 재정여건 및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등 여러 요인이 연관되므로, 현 시점에서 그 수준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009년을 제외하면 6~7%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었던 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 압박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등록금 인상률이 정부에서 반영된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정부부담 재정소요 및 채권발행규모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2010. 1. 22 법률 제 99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
 11.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천공제 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 ③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사항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제7조(감독 및 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그 위임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의 처분이 위법한 때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8조(대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

제9조(자격 요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으로 하고,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금리)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12조(대출 신청 및 추천)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설명 의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출 승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상환의무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 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①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11조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생활비 대출원리금의 계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 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의 상환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 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 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이라 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제2항의 상환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⑧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의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①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해외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된 채무자가 입국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하고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해외이주자(채무자에 한한다)에 대한 정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①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무자가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채무자에게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와 원천공제외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3조(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 중간납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

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의 체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원천공제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원천공제 납부를 하는 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한다.
- 제25조(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중간납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는 채무자는 같은 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중간납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 중간납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체납처분

-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83조, 제85조,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천공제 의무자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납부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경정하여 고지한다.
- ④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 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30조(연체금)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원천공제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출원리금을 제29조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

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상환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登記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이란 소득별 상환방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법정기일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징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납입한다.

제35조(이의신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 1. 납부고지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 3. 교부청구
 - 4. 압류
-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7조(자료 요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고등교육기관
 - 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성적, 석차 등 자료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 대출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채무자(채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이중 지원의 방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및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제42조(벌칙) 원천공제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과징수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벌칙)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납부

-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
2.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9935호,2010.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제20조 및 제21조의 채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법안비용추계 제 2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발 간 일	2010년 2월 17일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에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편 집 인	김 호 성
편 집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팀 (TEL 02·788·465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6073-295-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0